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78호 2017. 2. 8.(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3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7-146호 거창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및 준공검사 필
증 교부 5
- 거창군 공고 제2017-147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 7
- 거창군 공고 제2017-148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 8
- 거창군 공고 제2017-150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9
- 거창군 공고 제2017-151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 등 공시송달
공고(10월분) 11
- 거창군 공고 제2017-152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공시송달
공고(10월) 13
- 거창군 공고 제2017-155호 2017년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대상자 모

집 15

거창군 공고 제2017-156호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17

거창군 공고 제2017-165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

거창군 공고 제2017-169호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41

거창군 공고 제2017-170호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폐지안
입법예고 48

거창군 공고 제2017-171호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56

거창군 공고 제2017-176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4

거창군 공고 제2017-178호 공인 폐기 공고 91

거창군 공고 제2017-188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입법예고 93

회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2. 0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391-96 외 6건(부여6건, 변경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5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새터길 235	2009-04-01	2017-02-08	오무마을 북서쪽 내 건너에 새 로 생긴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 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6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391-96	2009-12-28	2017-02-0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 을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260	2009-07-02	2017-02-08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 을 잇는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853-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용동길 9-10	2009-04-01	2017-02-08	마을 뒷산이 방아공이 실이라 하고 마을 근처에 방앗간이 있 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 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82-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4길 306	2009-04-01	2017-02-08	행정구역명 도리가 반영된 네번 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62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길 703-11	2009-04-01	2017-02-08	마을 앞에 박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도로명주소 변경

일련 번호	종전주소	변경 후 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18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188-32	2009-04-01	2017-02-08	양지바른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42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129호(2015.10.0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42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02. 02.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60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월천지구 (소로3-4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거창읍 서변리 606-1번지일원	소로	3	42	348	6.0	2,813	경고465호 (‘92.12.24)	2015.03.14 ~2017.01.20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월천지구(소로3-4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목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98-4번지 일원			사업량	L=348m, B=6.0m			
시행방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6.03.14 ~ 2017.01.20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대	구	답	제	도	전	합계
	면적	863	56	219	66	665	944	2,183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계
	면적	2,183						2,183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계
	개요	2,183						2,183
소요사업비	2,000백만원			공사완료일		2016. 01. 20		

2017년 02 02일
거 창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7 - 147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2월 2일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전) 조성
2. 사업지구명 : 웅양 신촌지구
3.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산83(임)
4. 사업시행면적 : 2,184m²

토지의 표시					개간사업 시행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웅양	신촌	산83	임	29,058m ²	2,184m ²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7,200천원(부지조성 3,000천원, 작물시설 4,200천원)
7. 사업기간 : 사업시행(허가)일부터 2018.01.31까지
8. 사업시행자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3길11 김태호
9. 이의신청기간 : 2017. 2. 3. ~ 2017. 3. 11.
10.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7 - 148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2월 2일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전) 조성
2. 사업지구명 : 북상 소정지구
3.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산3-5(임)
4. 사업시행면적 : 4,942m²

토지의 표시					개간사업 시행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북상	소정	산3-5	임	6,680m ²	4,942m ²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11,700천원(부지조성 6,000천원, 작물시설 5,700천원)
7. 사업기간 : 사업시행(허가)일부터 2018.01.31까지
8. 사업시행자 :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항재들길 87-18 임종권
9. 이의신청기간 : 2017. 2. 3. ~ 2017. 3. 11.
10.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31조의2, 「농지법시행령」 제28조의 2호에 따라 거창군 일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거창군수

1. 공 고 명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
2. 위 치 : 거창군 일원
3. 목 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4. 요청내역
 - 변경 : 농업진흥구역 12.6ha → 농업보호구역 12.6ha
 - 해제 : 농업진흥구역 11.0ha → 농업진흥지역밖 11.0ha
5.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 『붙임』 참조
6. 관계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 장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 열람·공고 기간 : 2017. 2. 3. ~ 2017. 2. 17. (15일간)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현재 주민공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변경 및 해제 고시대상에서 제외됨.

농업진흥지역해제계획안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은 열람기간입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농업진흥지역해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2. 06. ~ 2017. 02. 20.(15일간)
- 공고대상 : 불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3일

거 창 군 수

건설기계 정기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반송내역(2016년10월)

연번	건설기계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소	반송사유	등록번호	비고
1	경남02도 1442	백*금	2016.10.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길 **	폐문 부재	1603502594355	
2	경남02도 4487	정*진	2016.10.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길 **	폐문 부재	1603502594362	
3	경남02고 8060	구*우	2016.10.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	폐문 부재	1603502594347	
4	경남02로 6642	박*영	2016.10.20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중앙길 ***	주소 불명	1603502595816	
5	경남06로 7410	송*현	2016.10.2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	수취인 불명	1603502595821	
6	경남02모 7916	삼**발 주식회 사	2016.10.2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	이사 감	1603502595822	
7	경남02로 8998	오*화	2016.10.2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길 **	폐문 부재	1603502595817	
8	경남03고 2409	유*봉	2016.10.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길**	폐문 부재	1603502595818	
9	경남09고 5114	원**업 엔지니 어링	2016.10.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번지	폐문 부재	1603502595807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7. 02. 06. ~ 2017. 02. 20.(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03일

거 창 군 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내역(10월분)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 소	반송 사유	등기번호	비고
1	14도5491	김*복	2016.10.1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	이사 감	1603502595185	
2	40소6907	이*환	2016.10.1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려*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42	
3	경남02노1971	백*명	2016.10.20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27	
4	16거4600	서*환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45	
5	90거7055	기*도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노 **	폐문 부재	1603502595210	
6	73두8059	박*규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	폐문 부재	1603502595159	
7	15어4152	박*이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68	
8	26어8102	한*수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20	
9	87머9811	김*희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길**	폐문 부재	1603502595189	
10	57더1867	강*진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길 **	폐문 부재	1603502595226	
11	28조7983	박*모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48	
12	23고1557	(주)홍**설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길**	폐문 부재	1603502595139	
13	경남50나8216	최*철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47	
14	74너2293	윤*희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길 **	폐문 부재	1603502595198	
15	42버3898	하*윤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	폐문 부재	1603502595223	
16	42우5193	하*윤	2016.10.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	폐문 부재	1603502595222	

2017년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17년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3일
거창군수

1. 신청방법 및 선발인원

- 신청접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담당
- 신청기간: 2017. 2. 6. ~ (모집인원 달성 시까지)
- 모집인원: 10명
- 모집방법: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55세 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 고령자로 구직 교육 과정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
※ 취업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
- 지원분야: 이·미용, 제과·제빵, 호스피스, 운전면허, 조리사,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기술자격 취득분야
※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기간 이수자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지원기준: 1인당 최고 지원액 500천원
- 자격취득자는 수강료 전액 지급(500천원 한도) : 자격증 및 수강확인증 첨부
- 수강료는 1인 1개 과정 수강료만 지원
(※ 지원금액 외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가구당 1인만 지원)
※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 등은 제외(취미, 헬스 등)

3. 지원절차: 수강종료 후 매월 5일까지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확인서 등 수강 확인 가능한 서류를 거창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담당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수강자 개인 계좌입금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담당(☎940-3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붙임 1]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지원신청서

□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만 세)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기타사항(해당란에 √표시)

가족동거여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명) <input type="checkbox"/> 혼자 거주 <input type="checkbox"/> 동거 가족수 명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무학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중졸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이상 ※중퇴는 졸업 √표시		
경력사항	근무처: (' 년 월 일 ~)	자격증	
	근무처: (' 년 월 일 ~)	(면허증)소지	
신청동기	<input type="checkbox"/> 재취업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자기발전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기재)		

□ 신청사항

희망 과정명	학원명	수강기간	월 수강료	비고
예시)운전면허증 취득	예시)○○자동차학원		원	

□ 교육비 지급 신청 계좌(교육자 본인 계좌만 가능)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제출

상기와 같이 소정의 구직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 재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며, 취업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규정이 2016. 2. 3. 신설되고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 기준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거창군수

1. 시행일자 : 2017. 2. 4. 시행
2. 법령근거 :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정지)
3. 공고내용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건축법 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의 위반행위 이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날부터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허가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가.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1항	
1. 10명이상이 사망한 경우		1년
2. 6명이상 9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10개월
3. 5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8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업무정지기간	업무정지기간
나.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2항		
1.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10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6개월	1년
2.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5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4개월	8개월
3.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2개월	4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다.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	건축법		

<p>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p> <p>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p> <p>3.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p>	<p>제25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p>	<p>3개월</p> <p>3개월</p> <p>1년</p>	<p>3억원</p> <p>3억원</p> <p>10억원</p>
--	-----------------------------	---------------------------------	-----------------------------------

4.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공보 게재

5. 기타사항 :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02. .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투자유치관련 자문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자격기준 및 수당범위 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 신설(안 제23조)

○ 자격, 기능, 수당범위를 정함

나. 성별 구분항목 신설(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제9호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2. 6. ~ 2. 27.(20일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 추가)

(6) 도내 규칙 현황: 총7곳(거제시, 밀양시, 창원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 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남, 녀”란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u>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② <u>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p>③ <u>자문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u>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p>○ 자문관 설치근거 자문관 자격, 기능, 수당 범위를 규정함</p>

【별지 제7호서식】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				업종(분류번호)	()
공장증설 투자내역	과 목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	비고	
	합 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청	건축공사 착수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1부 3. 건축비, 시설설치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축 공정을 확인서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공장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	년 월 일	공장등록일자		년 월 일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남 여)	(남 여)	(남 여)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없음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조금 신청업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회시」

안전번호	의견 17-0019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7. 1. 25.
안전명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				
<p>• 질의요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p> <p>• 의견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반드시 조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이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거창군 조례안”이라 함) 제27조에서는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거창군규칙안”이라 함) 제23조에서는 자문관은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되(제1항),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한편, 거창군규칙안 제23조제3항에서는 자문관에게 거창군조례안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및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문관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거창군조례안 제27조에서는 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두고, 거창군규칙안 제23조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p>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이 있다고 할 것인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자문관은 “군수”의 위촉에 따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거창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문관 위촉·운영의 근거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거창군 조례는 물론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자치입법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외에도, 행정규칙에 속하는 훈령·예규·지시·일일명령 등도 포함되는바, 군수가 위촉하여 군수에게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자문관의 위촉·운영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은 결국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활동에 관한 문제로서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문관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외에도 “예산의 심의·확정”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문관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2011. 6. 15. 법제처 회신 의견 11-0106 참조). 따라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반드시 조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문관의 위촉·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비교,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7. “이전보조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장비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금용자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용자 절차 및 지원기준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군외 소재기업이 군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도외기업의 본점 관내이전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투자촉진지구 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설투자 지원대상은 거창군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0억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그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증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분양가격은 금융비용의 50퍼센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최초 분양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부지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이 3년 이내에 해고될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0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

금 지원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투자유치기업이 군수와 입주계약 또는 투자유치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에 행한다.
- ③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 ③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자의 지정 삭제(안 제4조)
- 예산의 탄력규정 정비(안 제15조)
 -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

4.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7. 2. 6. ~ 2. 27.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 【fax 940-8409, 이메일:gss1966@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http://www.geochang.go.kr>)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40-84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2.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자의 지정 삭제(안 제4조)
- 예산의 탄력 규정 정비(안 제15조)
 -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17. 2. 6. ~ 2. 27.
-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에 관한 내용을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로 전부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제4조(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p>	<p>제4조(관리자의 지정) <삭 제></p>	<p>○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p>
<p>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p>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 이 조례에서 상위 법령보다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함.</p>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6.6.16】 【법률 제13568호, 2015.12.25, 일부개정】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2. 폐지이유

-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

4. 입법예고기간: 2017. 2. 6. ~ 2. 27.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 【fax 940-8409, 이메일:gss1966@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http://www.geochang.go.kr>)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40-84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2.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폐지이유

-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9조2부터 19조의5까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17. 2. 6. ~ 2. 27.
-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하수도법

【시행 2013.2.2】 【법률 제11264호, 2012.2.1, 일부개정】

제19조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9조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2.2.1]

제19조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물 재이용시설 권고대상 기준을 법적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정비(안 제3조)
-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정비(안 제4조)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정비(안 제5조)
-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정비(안 제7조)

4.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7. 2. 6. ~ 2. 27.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 【fax 940-8409, 이메일:gss1966@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http://www.geochang.go.kr>)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40-84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2.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물 재이용시설 권고대상 기준을 법적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정비(안 제3조)
-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정비(안 제4조)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정비(안 제5조)
-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21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17. 2. 6. ~ 2. 27.
-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수도요금 경감기준(제7조 관련)

경 감 대 상	경 감 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주) 경감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경감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하수도 사용료 경감기준(제7조 관련)

경 감 대 상	경 감 율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주) 경감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경감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 ²)	
지붕면적(m ²)		빗물 저류조 용량(m ³)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m ²)			
빗물 이용 예정 수량(m ³ /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m ³ /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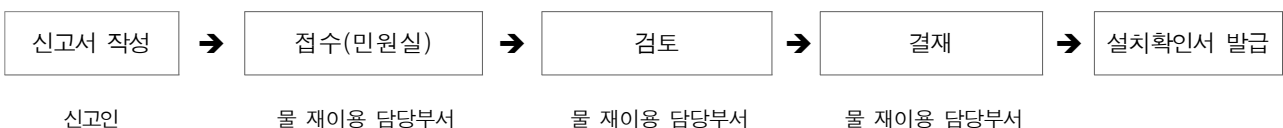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m ³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 신고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 ²)
중수처리 용량(m ³ /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m ³ /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m ³ /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오음(誤飲)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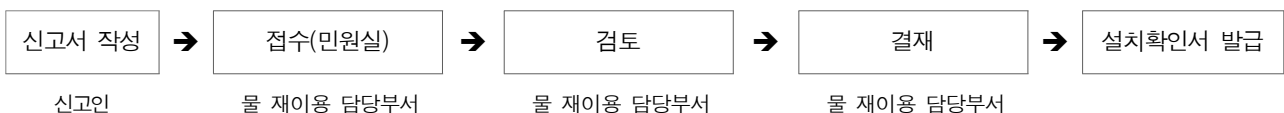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m ³ /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m ³ /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함 ○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므로 법상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정의조항 삭제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p> <p>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p> <p>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p> <p>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p>	<p>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p>	<p>○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는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수정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p>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p>	<p>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p>○ 물 재이용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계획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 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함</p>
<p>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군수는</p>	<p>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p>	<p>○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것은</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합계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p>제6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빗물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으로 판정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 	<p>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 	<p>“건축물”이므로 이에 맞게 표현 수정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권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표현 수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자율적이나, 군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 권고사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확인 신청서로 명칭 수정함 ○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를 본칙에도 같이 규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3. 처리시설에서 여과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 규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이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p> <p>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수 있는 구조</p> <p>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p> <p>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p> <p>5. 사용한 빗물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p> <p>6.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p> <p>7.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실시</p> <p>8. 빗물사용량 등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p> <p>제8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p> <p>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p>	<p>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p> <p>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p> <p>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p>	<p>○ 제3조제1항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하고, 시행령 제11조의 내용 반영하여 법령과 의미가 일치하도록 수정함</p> <p>○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법률에 따라 설치 의무대</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⑦ 중수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 4. 중수도 배관의 색은 상·하수도배관과 구분되도록 다르게 하는 등 중수도시설임을 분명히 표시 	<p>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p>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p>	<p>상에 해당하므로, 권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고, 법령과 표현 일치되도록 함</p> <p>○ 제3조제2항과 같은 사유로 수정함</p> <p>○ 제3조제3항과 같은 사유로 수정함</p>
<p>제9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p>	<p>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p>	<p>○ 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은 하·폐수처리수의 요금이므로, 이에 맞게 제목 및 내용</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제10조(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21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군수가 결정한다.</p> <p>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p> <p>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수정함</p> <p>○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는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은 약칭이므로, 법률과 표현 통일시킴</p> <p>○ 법률 표현과 일치하도록 자구 수정함</p> <p>○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자 외의 자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맞게 표현 수정함</p> <p>○ 보조금의 지급, 취소,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환수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p>
<p>제11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p>	<p>제7조(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p>	<p>○ 법률 표현 참고하여 자구</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6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군수에게 빗물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신청(별지 제5호서식)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0퍼센트 범위 내 2. 영업용 및 업무용에 대해서는 최고 40퍼센트 범위 내 3. 옥탕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 내 4. 산업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 내 <p>③ 빗물사용량은 1개월 또는 2개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계량기의 계량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권장설치 대상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라도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p> <p>⑤ 이외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다.</p> <p>⑥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및 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p> <p>제12조(빗물사용수량 인정 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p>	<p>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p>	<p>수정함</p> <p>○ 경감기준을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경감기준을 이 조례로 이동시킴</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등</p> <p>제13조(감면 수도요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p> <p>제14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p>		<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1.27. 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에 두도록 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가 폐지되어 물 재이용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함</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제20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1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1.11. 조례 제2067호)</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p>	<p>제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 발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6호, 2016.1.27, 일부개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4.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4.20, 타법개정】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 시설은 제외한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이를 사전 해소코자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cchojh@korea.kr

붙 임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02.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1. 제안이유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이를 사전 해소코자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 신설(안 제20조의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7. 2. 8 ~ '17. 3. 2 (21일간)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별표24>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 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m 이상 울타리(웁스, 차폐수 등) 설치하고,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언덕, 구릉지, 수목과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4〉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

발전용량(kw)	도로에서 직선거리(m)	주거밀집지역 또는 관광지 에서 직선거리(m)	비고
299.9 이하	200	300	
300 ~ 599.9	200	400	
600 ~ 999.9	200	500	
1,000 이상	200	600	

주1) 발전용량은 연접한 부지 30m 이내, 동시다발적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p> <p>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별표24>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 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p>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m 이상 울타리(웬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p>경우</p> <p>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p> <p>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언덕, 구릉지, 수목과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	---

공 인 폐 기 공 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7.

거 창 군 수



1. 공인 폐기 사유

- 문화재단 신설에 따른 기존 문화센터 공인 폐기

2. 폐기 공인

- 폐기 공인: 10점
- 폐기 방법: 거창군 기록관(문서고) 이관

3.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문화센터소장인	2.1cm×2.1cm	
거창군문화센터세입징수관인	2.1cm×2.1cm	

3.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문화센터재무관인	2.1cm×2.1cm	
거창군문화센터물품관리원인	2.1cm×2.1cm	
거창군문화센터지출원인	2.1cm×2.1cm	
거창군문화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cm×1.8cm	
거창군문화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거창군문화센터물품출납원인	1.8cm×1.8cm	
거창군문화센터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거창군문화센터분임경리관인	2.0cm×2.0cm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개관과 문화센터 조직 개편 등 당직 부서 변경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
- 나. 당직 부서 변경에 따른 규칙 개정으로 효율적인 당직 관리와 철저한 근무 태세 유지를 통한 제반 업무 추진

2. 주요내용

- 가. 당직 부서명 변경(별표)
(현행)상하수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 (변경)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 나. 문화센터 관련 사항 삭제(별표)
- 다. 평생교육센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련 사항 신설(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92] 또는 E-mail[onena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당직근무자의 편성(제6조제2항관련)					[별표]당직근무자의 편성(제6조제2항관련)					
부서명	구 분	당직 사령	당직 원	비 고	부서명	구 분	당직 사령	당직 원	비 고	사 유
본청	숙직	1명 (6급)	2명		본청	숙직	1명 (6급)	2명		
본청	일직	1명 (5~6급)	2명		본청	일직	1명 (5~6급)	2명		
농업기술 센터	일숙직		각 1명		농업기술 센터	일숙직		각 1명		
보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보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신 설>					평생교육 센터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부서 추가
상하수도 사업소	일숙직		각 1명		수도 사업소	일숙직		각 1명		명칭 변경
문화센터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삭 제>					조직 개편
한마음 도서관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한마음 도서관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종합사회 복지관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종합사회 복지관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거창 박물관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거창 박물관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거창사건 사업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거창사건 사업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수송대 관리사무소	일숙직		각 1명		수송대 관리사무소	일숙직		각 1명		
체육청소년 사업소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체육시설 사업소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명칭 변경
<신 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부서 추가
거 창 읍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거 창 읍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면사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면사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관 계 법 규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정 1964.03.10 조례 제46호] [일부개정 2015.6.10. 조례 제2248호]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8.12.31)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